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분양사무소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사무소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분양사무소에서는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방문 상담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며,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자격 및 상황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이루어질수 있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에 따른 방문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예약시간에만 방문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사무소 입장 전,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분양사무소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분양사무소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취소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1. 14(금), 주택관리번호는 2022930001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3.16.(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18000257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취소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 및 아파트 취소후 재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및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계약취소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취소후 재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 12. 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2022. 01.19.(수)	2022 .01.25(화)	2022 .02.08(화)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약신청한분중 모집세대의 400%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취소후 재공급] 메뉴에서 신청 -청약통장 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분양사무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18/chuncheoncentral)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춘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계약금 완납 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2020. 02.21개정))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후단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의거하여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공급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건축과 - 1840호(2022년 01월 12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75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7층, 지상 49층 / 총 1세대

■ **입주시기** : 2022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최하층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합계		
민영주택	2022930001	01	084.9751E	84E	1	84.9751	28.8759	113.8510	48.1212	161.9722	13.4531	0
총세대수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세대별 분양가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계		입주지정일
084.9751E	103	1804	79,750,000	282,250,000	362,000,000	72,400,000	289,600,000

■ **공통 유의사항**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 세대에 대한 재분양이며,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플러스옵션은 해지계약자가 체결한 약정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 하여야합니다..(단 세대별로 옵션이 상이할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은 공급금액에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지분을 용도별 계약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 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안내 업무는 사업주체(주식회사 대우건설)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 조 제 8 호(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자

특별공급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 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 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 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취소후재공급 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2022.01.19.(수)	2022.01.25.(화)	2022.02.08.(화)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약신청한분중 모집세대의 400%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취소후 재공급]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분양사무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소형 저가주택도 유주택으로 봄)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II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02.08(화) 10:00 ~ 16:00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75 2층)

※ 분양사무소에서는 당첨자 확인이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서류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ㅇ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분양사무소 비치
	ㅇ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통장가입기간과 예치금액 확인
	ㅇ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당사 분양사무소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ㅇ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ㅇ		계약금 입금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ㅇ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주민번호 뒷번호 표시)
	ㅇ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2부 / 본인발급/ 1달이내 발급
	ㅇ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ㅇ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아여 전체 발급(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ㅇ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 “Y”로 체크
	ㅇ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분양, 전매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
	ㅇ		주민등록표초본	・모집공고 이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ㅇ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ㅇ		해외체류증빙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
부적격당첨통보자	ㅇ		무주택 소명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ㅇ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에게 위임
	ㅇ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부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ㅇ		인감도장(계약자)	
	ㅇ		위임장(계약자)	
	ㅇ		신분증(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가 가능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취소후 재공급 입주자로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 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4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추후통보 예정
- 계약체결일 : 추후통보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의 계약시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의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차)	KEB하나은행	203-910043-42504	㈜대우건설
잔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Ⅳ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금액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품목	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84E	103	1804	발코니확장	20,600,000	2,060,000	18,540,000
			시스템에어컨(엘지전자) 거실/주방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 침실 4	6,900,000	690,000	6,210,000
			주방 바닥재 강마루	무상		
			드레스룸 파우더장 입식	무상		
			계	27,500,000	2,750,000	24,750,000

※ 상기옵션으로 계약 후 공사진행 중 계약해지로 인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 조정 및 취소, 기타 옵션 부분 수정이 불가하며 상기 사항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EB하나은행	203-910043-44804	(주)대우건설
잔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잔금계좌는 전체 옵션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옵션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플러스 옵션 설치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 개소)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은 제외)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하며, IoT 스마트스위치 PLUS 에서 냉방제어가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IoT 스마트스위치 PLUS 내 냉방기능은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건축법시행령」제 2 조 제 14 호, 제 46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변경에 대해 추가 선택이 불가하며 이로인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플러스 옵션 설치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 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플러스옵션은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계약과 별개이며 납부계좌, 납부일정은 계약서에 별도 공지합니다.

V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단지 외부여건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수변공원, 경관녹지, 완충녹지 주변건물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현재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전부 및 일부의 변경,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은 본 아파트 사업부지와 무관하며,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개발계획(도로, 공원, 녹지 포함)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북측(공지천변) 및 동측(KBS 방송국변)에는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보행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보행공간은 춘천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입주민이 보행공간을 점유 또는 통행제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 외부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또는 채광창, 주동 제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계획 및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공간(휴게, 놀이, 운동, 편의 및 혐오시설 등 포함)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의 일부(812.75㎡, 추후 변동 될 수 있음)에 보행공간 및 일부도로가 설치되고 이와 관련해 공유 대지에 관한 등기에 보행공간 및 일부도로의 주무관청인 춘천시를 권리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됨(존속기간:영구)을 고지받아 이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사업주체 및 춘천시청 등을 상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임료(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등 포함)청구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나 민원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시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지상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사업주체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복합시설은 아파트와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과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상환경 설계 적용에 따라 주동 외 저층부 판매시설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판매시설 등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법적 공개공지 2개소와 보행공간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해당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입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명시설, 옥상층 경관조명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3층부위에는 비상차(소방차, 응급차)의 접근을 위한 비상용 경사로와 비상차로가 설치되며, 해당 경사로 및 비상차로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삿짐 운반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혹은, 기타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출입구, 지상주차장 등의 설치로 인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및 차량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판매시설 용도와 주거시설 용도로 층별 구분하여 계획(판매시설 : 지하2층~지하3층, 주거시설 : 지하4층~지하6층)되어 있고 진출입구도 별도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용도별 지하주차장내의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동별 주차대수, 출입동선 길이 등), 동별 지하 엘리베이터 홀 면적 및 연결통로의 길이,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릅니다.
- 101동,106동 사이에 판매시설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레베이터 옥탑이 3층 지붕면 위로 노출되어 일부 조망의 간섭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휘트니스, 사우나, 보육시설, 경로당 등)은 단지동측 105동,106동 1층, 2층에 위치하며, 105동, 106동 사이 3층에 부대시설 접근용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사생활 간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계획특성상 지상3층 주동하부에 외부인 접견공간, 우편물수취함 등을 포함한 메인로비와 자건거보관소 등이 설치되며, 3층 옥상정원부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104동 후면에 설치되어 104동 인접세대에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사생활 간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설치하되, 층당 1개소씩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된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며, 계단실의 창호는 동일사유에 의해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씩 계획될 예정이며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104동 사이 3층 지붕에 판매시설 쿨링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연무, 악취 및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102동,103동 사이 3층 지붕에 판매시설용 장비(냉난방 실외기, 탈취기, 급배기구 등)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연무, 악취 및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층에 설치된 파고라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동별 25층 코아당 1개소 피난안전구역 설치됩니다.
- 102,105동 3층 및 25층에 중간기계실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49층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등)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저감을 위해 하부 PIT를 계획하였으나, 공간 활용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하부세대에 진동,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 전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동 필로티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부 두겁 등 외부 돌출공간의 활용은 안전 상 불가하며, 개별세대의 물품비치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분리수거장 및 쓰레기집하시설은 지상층이 아닌 지하4층에 구역별로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거리가 다른 동에 비해 멀 수 있으며, 지하에 설치됨으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05동 지하4층에 구역별 무인택배보관소 2개소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거리가 다른 동에 비해 멀 수 있으며, 해당동 지하출입구 부근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배치에 따라 각 동별 좌측세대는 서남향으로 구성되어 채광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05동 전면에 계획된 84F TYPE은 배치 구조상 다용도실에서 인접 세대와 시각간섭 및 소음, 방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칭유리 창호가 설치되어 채광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에서의 소음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의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2개소는 3층 옥상 중앙에 위치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시공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각 동별 출입구 상부세대는 주동 입주민의 빈번한 출입 및 로비를 통한 물건이동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치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104,105,106동의 저층부는 헤드라이트에 의한 눈부심,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이 도로에 면하고 있어 소음저감을 위해 3층 난간부에 방음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 간섭이 발생될수 있고 제반 방음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도로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설치기준에 따라 102동,105동 옥탑부에는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층에는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주동 Core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인승 및 대수, 성능은 동별 세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단지내 설치되는 옥외보안등 등 조명기구의 불빛이 저층부 세대에 비춰 야간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방범을 위한 CCTV는 지하주차장,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에 설치되며 기준층 복도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사양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의 마감사양에 따라 해당부위의 창호크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바닥마감재 마루의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정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평면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 과정에서 법정초과 발코니 면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관련도서 등의 열람을 통하여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24층까지는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었으며, 25층부터 최상층까지 AD를 통한 공동 배기시설이므로 외부의 환기캡으로 인해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단위세대 발코니 앞에 동출입구, 구조 등의 이유로 쓸수 없는 골조 바닥(별도 마감 없음)이 노출될 수 있고, 법적으로 이를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따로 난간등은 설치 되지 않을 예정이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 1개소에는 화재시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위한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됨.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픈형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의 형태 및 재질은 구조, 풍압,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 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의 사양 및 제조사, 수량, 위치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IoT 스마트스위치 PLUS, 월패드,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최하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IoT스마트스위치PLUS의 냉방제어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기능이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세대내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될 부대시설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등 부대시설 내 바닥 레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창호사이즈, 외관 디자인, 내부 마감 및 시설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계획
 실내 : 피트니스클럽(GX클럽, 샤워실 및 락커룸 포함)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스크린골프연습장 1개소
 실외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2개소 및 야외운동기구로 계획(시설물은 변경 될 수 있음.)
- 101동 49층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등)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엘리베이터는 49층에 정지하지 않으므로, 해당동 입주민도 1층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Ⅵ 기타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 년 3 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36 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 세대 내 창호는 기밀성능 KS F2292 시험방법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하는 부위 제외)	-
고효율 자재	적용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 조절장치 설치	-
절수설비	적용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춘천 온의지구 주상복합
2. 신 청 자 : ㈜대우건설
3.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75번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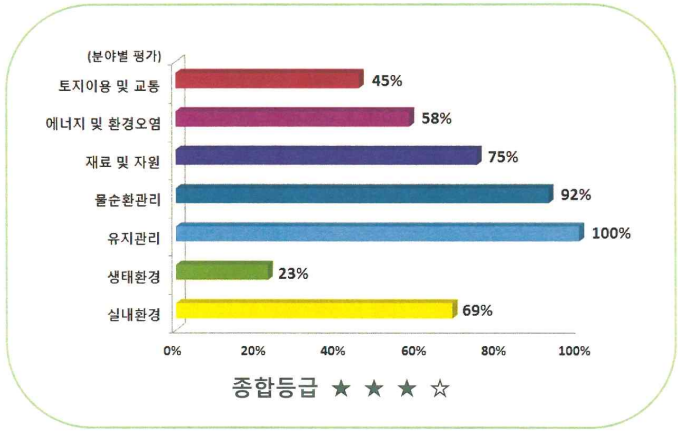
2017년 09월 01일

한 국 감 정 원 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 춘천 온의지구 주상복합 건 축 주 : ㈜대우건설 준공(예정)일 : 2021.07.16.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75번지 층 수 : 지하7층, 지상49층 연 면 적 : 257,691.9184㎡ 건축물 용도 : 복합건축물(공동주택+판매시설) 설 계 자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 증 번 호 : 2017-217 인 증 기 관 : 한국감정원 유 효 기 간 : 2017.09.01.~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09월 01일

한 국 감 정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및 통신
회사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삼이엔지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994,413,000	960,385,800	82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명
상호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10111-2137895

■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및 홈페이지 안내

분양사무소	홈페이지	분양문의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75, 2층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17-2 2층)	https://www.prugio.com/house/2018/chuncheoncentral	☎ 1811-1606 (10:00 ~ 17: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8.03.16.)를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18/chuncheoncentral) 확인하시기 바랍니다.